##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994 발의연월일: 2024. 12. 27.

발 의 자: 복기왕・이연희・정성호

박용갑 • 한민수 • 최기상

박은정・임미애・정준호

채현일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 현금 외 결제 수단이 보편화 됐지만, 보험료 납부에서는 신용카드 결제가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데, 2024년 상반기 기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상품의 카드납부 비율은 평균 6.8% 에 불과한 상황임.

하지만 보험료의 현금 또는 계좌이체 납부 방식이 불편하고 현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보험 가입 고객이 보험료 미납 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음.

이에 보험료 납부 방식에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되 강제하는 방식보다는 보험업계와 여신전문금융업계, 정부 간 자율적 협의를 유도함으로써, 보험 가입 고객의 보험료 결제 편의성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3절에 제10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3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 납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103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
	는 보험료 납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상품
	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
	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으로 보험료
	를 납부할 수 있다.